#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70

발의연월일: 2020. 8. 25.

발 의 자:이태규·성일종·이 영

박대수・최연숙・태영호

유경준 · 지성호 · 이명수

김영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18년 4월 신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전까지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 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들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기술보증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업의 대표이사 등은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재기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 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 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37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 법률 제 호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기금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
면제) (생 략)	면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기금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제29조의 업무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③ 제2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
	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
	48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면
	책을 주장할 수 없다.